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12일(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14일, 이인순 의원 외 8인 발의
-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구민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7호)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3) 사전협의 : 건강정책과, 건축과
- 4)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 요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¹⁾를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3호**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23. 8.16 시행 2024. 8.17)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여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형 등의 유형으로 조성

-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이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되어 있어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등에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추가하면서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공개공지의 경우, 쾌적한 환경과 주민편의를 위해 사유지 내의 공지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설치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빈번한 흡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공중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되도록 흡연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성북구 지역내 금연구역은 ‘24. 7월 현재 총 10,463개소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법(9,595개소), 시조례(73개소), 구조례(795개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성북구 총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건축법 >

제4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격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공개공지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관련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붙임 2 성북구 공개공지 현황 ['24.3. 기준]

□ 총 37개소, 총 설치면적 12,828㎡

연번	행정동	건물명	사용 승인	용도지역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설치면적
1	길음동	대 한에수교장로회 새생명교회	2009- 12-09	일반주거지역	종교 시설	1,510.30	747.87	7,735.28	104.40
2	길음동	현대백화점(미아점)	2001- 08-23	일반상업지역	판매 시설	8,119.00	4,850.12	88,702.08	2,349.76
3	길음동	서울척병원	2011- 08-31	일반상업지역	의료 시설	813.40	478.26	8,234.10	45.38
4	동선동1 가	유타	2008- 09-02	일반상업지역	판매 시설	2,159.60	1,060.48	26,488.20	374.87
5	동선동1 가	코아루센 타시아	2010- 06-25	준주거지역	공동 주택	2,597.80	1,525.18	21,310.34	192.10
6	동선동1 가	대 한에수교장로회 성일교회	2013- 12-20	일반주거지역	종교 시설	1,527.12	887.62	5,371.47	86.12
7	동선동3 가	성신여대 기숙사	2020- 06-15	일반주거지역	공동 주택	1,115.60	542.85	2,864.22	45.05
8	동선동4 가	베스트웨스턴 성북관광호텔	2015- 08-03	일반상업지역	숙박 시설	993.90	596.16	9,785.00	53.27
9	동소문동 4가	드림트리	1998- 12-29	일반상업지역	업무 시설	1,123.80	645.21	6,941.18	61.39
10	동소문동 4가	홍화브라운 동소문빌딩	2006- 10-02	일반상업지역	업무 시설	2,413.52	1,108.48	10,911.68	263.56
11	동소문동 4가	부라다리빙텔	2003- 03-04	일반상업지역	근린 생활	2,313.10	1,168.25	16,814.29	184.50
12	동소문동 5가	돈암 동일하이빌	2006- 04-28	일반상업지역	공동 주택	4,538.60	2,486.60	47,086.58	981.41
13	동소문동 5가	성신여대역 솔하임	2018- 05-28	일반상업지역	공동 주택	539.20	320.64	3,479.04	35.24
14	동소문동 6가	시티플레이스	2015- 01-16	일반상업지역	공동 주택	973.50	447.22	5,829.55	45.64
15	동소문동 6가	보미리즌빌	2012- 05-21	일반상업지역	공동 주택	1,258.20	1,237.82	8,615.08	64.10
16	보문동4 가	보문 하우스토리	2011- 08-05	준주거지역	공동 주택	3,828.60	2,233.58	32,444.87	381.61
17	삼선동3 가	성북세무서	2017- 10-13	일반주거지역	업무 시설	2,883.60	1,389.97	7,450.12	223.11
18	삼선동3 가	기독교대한성결교 회본교회	2006- 11-22	일반주거지역	종교 시설	3,135.70	1,867.36	9,784.31	660.83
19	삼선동5	서울성북경찰서	2008-	준주거지역	업무	5,375.00	2,112.49	13,253.85	337.41

	가		11-27		시설				
20	삼선동5가	성북구청	2009-04-29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3,830.00	2,246.24	27,489.39	564.54
21	석관동	광천교회	2009-12-07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2,517.00	1,351.73	12,672.41	246.98
22	장위동	장위동 동원베네스트	2005-11-01	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2,210.00	1,088.74	17,742.82	289.45
23	장위동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	2019-09-03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3,026.00	1,707.42	18,922.35	158.47
24	장위동	H하우스 장위	2019-09-03	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1,993.00	1,178.32	15,625.15	40.45
25	종암동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	2008-05-01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4,969.10	2,966.39	34,666.29	631.58
26	종암동	성북구의회청사	2000-05-22	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	5,306.83	1,524.40	5,846.03	확인불가
27	하월곡동	대한불교진각종유 지재단	2017-08-10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14,783.00	5,909.98	25,615.53	1,040.00
28	하월곡동	월곡갑을명가	2007-07-30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4,128.00	2,426.98	31,267.21	689.32
29	하월곡동	성북구 보건소	1999-06-30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1,185.00	666.70	7,426.87	확인불가
30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2010-07-02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12,694.00	6,332.17	124,700.55	1,337.16
31	하월곡동	영광프라자	2003-11-17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2,475.00	1,472.69	11,054.64	178.76
32	하월곡동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북성전	1984-04-10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5,437.00	1,286.66	5,923.06	331.97
33	하월곡동	삼양식품빌딩	-	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2,236.00	906.91	9,620.24	134.24
34	하월곡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	일반상업지역	기타	3,331.00	2,541.63	9,994.53	168.56
35	하월곡동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 의료재단	-	일반상업지역	의료시설	1,357.00	797.07	9,886.30	96.15
36	하월곡동	삼전솔하임3차	-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910.00	440.36	7,286.91	45.93
37	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	-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4,144.00	1,981.76	38,457.96	385.14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12일(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14일, 오중균 의원 외 16인 발의
-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중균 의원)

가. 제안이유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사전협의 : 건강관리과
- 4)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 요

- 본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현재 법적 부부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8년 4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체 25개구로 확대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평균 270여명이 참여²⁾하고 있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임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요>

- 대 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 부부)(원인불명의 난임)
여성나이 :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부부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한 서울시민
- 치료기간 : 1회 치료기간 총5개월 <3개월(집중치료)+2개월(관찰기간)>
- 내 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협약비용의 90% 지원(120만원)※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횟수 : 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2회(연1회)
- 소요예산 : 19,064천원(시비100%)

-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되어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실정이나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개정 2019. 4. 23.)에서는 ‘난임’을 정의하면서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개정됨. 이에 조례상 난임에 대한 지원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법 개정을 반영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2) 참여자수(서울시 전체) : 2023년 286명, 2022년 328명, 2021년 249명, 2020년 226명

<안 제4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생시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혼 부부를 수혜대상으로 확대하여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에 의한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관련 법규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12일(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13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유 형	정 원	개 소	비 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일 반 형	장위동 97-3, 1층 (장위3동주민센터)	138㎡	30명	2024.12. (예정)	신규설치

2)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다. 관련근거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성북 14호점’ 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성북14호점이 2024년 12월 장위3동주민센터 1층에 신규 설치 예정 임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향후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시설 설치 및 연간 운영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4호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55,620	42,000	138,929	74,691	
연간 시설운영비(예상)	137,556	25,578	69,345	42,633	종사자2명 필수

-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³⁾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성북구는 시립거점형을 포함하여 총 13 개소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 소	면적 (㎡)	정원 /현원	개소일	위탁운영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센터 3층	110	29/29	19.01.01.	(사법)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호점 융합형	김정미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35	20.12.21.	
3호점	장현옥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21.03.01.	(사법) 미래복지경영
5호점	양재연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21.10.01.	(사법)해피피플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0	21.10.01.	(사법)꿈의아이들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송인로 50, 114동 1층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26	21.03.01.	
9호점	김정윤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90	23/23	21.03.01.	(사법)해피피플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30	21.09.01.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11호점	김지윤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30	22.07.01.	(사법)꿈의아이들
12호점	안은숙	길음1동	삼양로9길 14-7, 2~3층 길음소리마을센터	196	30/30	23.12.18.	(사법)세대통합복 지문화교육협회
시립 거점형	최명숙	종암동	회기로3길 17, 2~5층	1,170	-	22.10.01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4)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